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1.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9. 1. 12
- 다. 상정일자 : 제142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9. 1. 2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의 일률부과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요율을 차등화 함(안 별표1의 제4호)

(현행)

· 차량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개정안)

-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안 제2조)

(현행)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안)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것에 한한다.

-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안 별표1의 제7호)
 - 생활정보지배포대가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도시미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효율적인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1의 제7호)
 -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년에 점용면적 1㎡당 토지 가격에 0.02(종전 0.05)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등으로 정리하여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다. 개정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008.9.30조례 제4672호(개정)

3. 검토보고의 요지 (신승관 전문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2008. 9. 30 개정되었는바, 우리구 조례와 불일치 되는 점용료 산정 기준을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그동안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던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하여 “생활정보지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양성화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별표1의 제4호와 관련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2008년도 도로점용료는 1,075건에 1,811,293천원을 부과하여 약 95.5%에 해당하는 1,012건에 1,730,48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별표1의 제7호와 관련한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2008년도 도로점용료는 105건에 57,596천원을 부과하여 약 90.3%에 해당하는 92건에 51,990천원을 징수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